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FAQ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함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

순	구분	Q&A
1	사업운영	<p>①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공연장의 역할과 중요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전년도의 공연 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과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지원금이 민간공연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의 지원 비율을 각각 7:3으로 적용합니다. 더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미환불 대관료에 대한 지원유형을 유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적격성 심사를 운영합니다.</p> <p>②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작품 발표에 있어 공연장 대관료 비용이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선정 시, 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사후 보전하여 후속작품 창작 발표에 대한 부담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p> <p>③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총 몇 회 운영될 예정인가요? 하반기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언제쯤 지원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공연예술단체(개인)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3회 공모를 예정하고 있으며, 아직 연간 공모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공모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2	지원신청자격	<p>① 지원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창작발표를 하시는 경우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국내 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은 지원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원신청 시 대관공연장에서 '공연장등록증 사본'을 받아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p> <p>② 단체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의 사본을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p> <p>③ 여러 개인이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팀 단위의 활동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로 지원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개인예술인들이 일시적으로 협업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여 프로젝트팀 단위의 활동도 대관료를 지불한 개인의 명의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순	구분	Q&A
2	지원신청자격	<p>④ 기획사를 통해서 대관계약을 대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지원신청 해야 되나요?</p> <p>⇒ 아니요, 실제 공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명의로 지원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대관 관련 기획사의 대행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인 경우(실제 대관금액을 기획사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기획사 명의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p>⑤ 지원대상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p> <p>⇒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0년 12월에 종료된 공연의 경우, 전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없거나, 타 기금으로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정산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유형②)에는 최초 공연 시작일이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4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공연은 다음 공모에 포함될 예정이니, 다음 회차에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⑥ 공연의 종료일이 2021년 12월 이후인 장기대관 공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신청 할 수 있나요?</p> <p>⇒ 네, 지원대상 사업기간의 대관료 부분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올해도 2020년 12월~2021년 11월까지의 공연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으로 2021년 11월 이전에 종료되는 장기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본 공모에 지원신청하실 수 없습니다.</p>
		<p>⑦ 공연종료일이 3월 1일이면, 이번 공모에서만 지원신청 가능한가요?</p> <p>⇒ 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지원대상 사업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공연(예정)한 작품은 이번 공모에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공모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유의하여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⑧ 모든 공연장의 대관공연이 지원신청 대상인가요?</p> <p>⇒ 국내 소재의 등록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한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안전한 공연 환경을 위하여 공연법 제9조 1항에 따라 객석 수 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한 공연장이 공연법상 등록된 공연장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올해에는 공연장에 문의하셔서 공연장등록증 사본을 받아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p>
		<p>⑨ 문예진흥기금을 기존에 수혜 받은 공연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 아니요,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작품(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p>
		<p>⑩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지원받고 있는 공연은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 대관료 항목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였으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대관료 항목 집행에 사용되었다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 보조인 경우에도 지원신청 불가) 지원결정 이후에 해당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됩니다.</p>

순	구분	Q&A
3	지원유형	<p>① 유형①과 유형②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유형①은 완료된 공연을, 유형②는 취소된 공연을 지원합니다. 유형①은 기존 운영되었던 사업과 동일하게 예정된 기간 동안 진행한 공연을 지원합니다. 공연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형②는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지원유형으로 취소된 공연의 미환불 대관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p> <p>②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축소되었고, 공연티켓 판매율이 낮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형②로 지원신청 하면 되나요? ⇒ 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 외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유형②는 '미환불 대관료'에 대한 지원으로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합니다.</p> <p>③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서 미환불 된 대관료를 지원받았고, 이후 공연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업(공연)으로 다시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공모 이후에 다시 대관을 진행하시고,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 이후에 대관계약을 맺으시고, 대관료를 납부하신 부분의 서류를 지원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	지원내용	<p>① 총 집행한 대관료의 90%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90%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p>② 모든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대시설은 대관공연장에서 공연 시에 제공하는 시설, 장비 및 공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장비 임차 비용, 배너홍보비, 연습공간 사용료, 등은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 및 리허설 일정이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단, 현장의 다양한 경우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지원 신청하여 주시되, 해당 항목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③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 예술인이 입국하지 못하여 공연이 부득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 혹은 월드투어 공연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체의 기획공연에서 외국예술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의 목적 및 내용이 본 사업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p> <p>④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 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여 라이선스뮤지컬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500석 이상의 대형공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하여 동일하게 유지됩니다.</p>

순	구분	Q&A
4	지원내용	<p>⑤ 대관료는 환불받았으나, 계약금 혹은 부대시설사용료는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p> <p>⇒ 네, 계약금 혹은 부대시설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한 부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p>
		<p>⑥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p> <p>⇒ 네,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링크 등을 함께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재단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사업(공연)의 경우, 대관료가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⑦ 공연장에서 대관료 항목을 할인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p> <p>⇒ 네,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내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공연장의 동문할인, 기간할인, 특별할인 등이나 공공지원을 받는 공연장의 할인된 대관료(서울형 창작극장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5	지원신청	<p>① 한 단체에서 복수의 공연작품 대관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p> <p>⇒ 네, 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공연작품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내용을 1개의 지원신청서 안에 모두 작성하여 주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도 한 번에 지원신청 해주시면 됩니다.</p>
		<p>②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p> <p>⇒ 올해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입니다. 다만, 신청된 지원금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단체로 간주합니다. 2개 이상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대표자의 연간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p>
		<p>③ 1개 신청사업의 신청금액(대관료의 최대 90%)이 연간 최대지원금인 3,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액을 사전에 조정해야 하나요?</p> <p>⇒ 네, 3,000만원을 상회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한도를 고려하여 3,000만원까지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되더라도 대관료 집행의 적정성 및 명확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결정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p>
6	제출서류	<p>① 필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p> <p>⇒ 지원신청서, 대관계약 증빙서류, 기획사 대행계약서,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공연장 등록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입니다. <u>단체인 경우, 지원단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유형② 미환불 대관료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공연취소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u> 또한 공연진행에 따라 사용하신 부대시설이 있으시다면 사용 내역도 증빙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명 혹은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p>
		<p>② 지원신청서 내에 있는 '확약서'와 '서약서'도 필수서류인가요?</p> <p>⇒ 네, 필수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p> <p>① 전자서명이나 도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란에 붙여넣어 날인하시면 됩니다.</p> <p>② 전자서명이나 전자도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하신 후에 스캔하여 한글문서 내에 붙여넣기, 혹은 다른 파일들과 함께 별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p>

순	구분	Q&A
6	제출서류	<p>③ 대관료 집행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전자계산서+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는 지원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네, 지원금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지원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도 1~3차 공모에서는 한시적으로 일부 누락된 서류가 발견되거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받았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모두 결격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④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부대시설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네, 대관 공연장의 부대시설사용료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지원 신청한 단체(개인)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부대시설 사용내역을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p>
		<p>⑤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대관공연장의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대관계약 증빙서류(대관계약서 등)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관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관공연장의 작성거부 및 온라인 대관 절차, 대체 서류 작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서, 대관승인공문의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대관일정, 대관금액, 대관내역(지원신청하는 공연작품명 포함)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p>
		<p>⑥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의 경우, 별도의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의 집행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공연장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효력의 대체증빙이 가능합니다. (납부고지서+이체확인증으로 제출)</p>
		<p>⑦ 단체명의로 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실제 지원금을 입금 받으실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을, 단체는 단체 명의의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도 제출 가능합니다.</p>
		7
<p>② 선정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본 공모에서는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정비율 등은 지원신청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③ 신청한 모든 사업(공연작품)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초 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지원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순	구분	Q&A
7	지원적격성 심사	<p>④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의 지원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요? ⇒ '민간공연장활성화'의 사업 목적에 따라 올해 공모는 민간공연장과 국공립 공연장의 지원비율을 각각 7:3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원적격성 심사 진행 후, 지원결정액의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액과 지원결정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⑤ 지원적격성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신청 마감일 이후, 4월 5주(마지막 주)부터 지원적격성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안내 하고 교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정은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액 조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8	시스템관련	<p>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업개요' 탭에서 총소요액과 지원신청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총소요액'은 신청공연에서 지출된 대관료 항목의 총 집행금액을 기입하여 주시고, '지원신청액'은 총 대관료의 최대 90%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p> <p>② 2020년 11월~2020년 12월에 진행한 공연이나, 시스템에서 2020년 12월 1일 이전의 날짜 선택이 안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은 지원대상 사업기간(2020.12.1~2021.3.31)을 기준으로 실 사업기간 작성란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공연 일정이 종료된 공연의 경우 금번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시스템에서는 2020년 12월 1일을 사업 시작일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지원신청서 내에서는 실제 사업기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③ 단체 대표자명의 NCAS 계정으로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체 활동인 경우에는 단체의 아이디로, 개인 활동인 경우에는 개인의 아이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 활동인 경우, 단체 대표자명의 아닌 단체 명의로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④ 제출완료 하였는데 필수서류가 누락되어 수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제출을 완료하셨는데,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원신청마감일(19일) 이전까지는 기존 지원신청을 회수한 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지원신청 현황'에서 해당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기존 지원신청내용이 나옵니다. 팝업창의 회수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p> <p>⑤ 지원신청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로그인 하신 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TF'를 선택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진행절차-1.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지원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p> <p>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 시스템 문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